[1] 각종 감면 후의 세액 ⦁소득공제금액･손금산입금액･익금불산입금액･비과세 금액, 세액공제금액,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적용 후의 세액 중 큰 금 액 [2]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 × 최저한세율 ⦁소득공제금액･손금산입금액･익금불산입금액･비과세 금액, 세액공제금액,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전 의 과세표준× 최저한세율 ＋ [3]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⦁가산세 ⦁이자상당가산액 ⦁감면세액의 추징세액 － [4] 최저한세 계산 후에 공제하는 금액 ⦁외국납부세액 ⦁재해손실세액 ⦁기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･세액면제 및 감면 \* 최저한세 적용세율 구 분 과세표준 ’11∼’12년 ’13년 ’14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7% 7% 7%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∼3년차 8% 8% 8% 유예기간 이후 4∼5년차 9% 9% 9% 100억 이하 10% 10% 10% 1천억 이하 11% 12% 12% 1천억 초과 14% 16% 17%